

농촌교육농장 단체보험(배상책임)

1. 보험가입조건

단 체 계 약 자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피 보 험 자	<p>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마을 및 마을주민</p> <p>1) 마을 : 마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해당마을에 대한 상세주소를 고지한 농촌마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최소 행정단위인 “리” 또는 “동”내에 소재한 촌락 또는 자연부락에 한함.</p> <p>2) 마을주민 :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p> <p>3) 대상마을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또는 농촌교육농장협회의 소속 교육농장</p>
담 보 내 용	<p>1) 농촌 교육체험행사관련 피보험자의 행사운영 및 행사시설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방문객)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되는 법률상 배상책임</p> <p>※ 행사지역 : 본 보험에서 담보하는 체험관광행사의 행사장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고지한 상세 행정 주소상의 ‘리’ 또는 ‘동’내로 제한함. 따라서, 고지한 상세행정주소를 벗어난 행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 단, 행사운영상 부근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전에 고지한 지역에 한하여 보상함.</p>
보 험 기 간	1년

2. 보험유형별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가.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개요

보험증권상의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500만원 (대인/대물 각각 적용)
- 대물보상한도 : 1천만원(1사고당), 1억원(연간총보상한도액)
- 대인보상한도 : 1인당 3천만원~3억원(사고당/연간 10억원)

※ 사고위험정도별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분류

- A군 : 피보험자가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레포츠등 위험한 프로그램 포함.

(래프팅, 나룻배타기, 스노클링, 서바이벌게임, 눈썰매타기, 승마, 오리엔티어링, 스케이트 타기, 얼음축구, 인공암벽타기, 물썰매타기, 활쏘기, 뗏목타기, 산악오토바이(4륜), 수영장, 체험다이빙, 스킨스쿠버, 고정시설내에서의 낚시(갯바위 낚시, 삼바리 낚시, 바지선낚시 등)

- B군 : 피보험자가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레포츠등 위험한 프로그램 불포함.

- 갯벌 체험 : 갯벌산책, 갯벌조개잡이체험, 쪽잡이, 갯벌탐사 등
- 바닷가 체험 : 바닷가에서 어패류잡기 및 해산물채취 등의 어장체험/생태체험교육 (맨손 고기잡기, 고기잡이(통발/족대/고망낚시 등), 고막잡기, 석화캐기, 골뱅이잡기, 소라잡기, 바지락잡기체험, 들게잡기체험 등)
- 기타 체험 : 추수체험, 야생화트레킹, 지신밟기, 빙어낚시, 경운기타기, 트랙터마차타기 등

【구내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 대인보상한도 : 1인당 5십만원~5백만원(사고당/연간 1천만원)

농촌교육농장 단체보험(배상책임) 설문서

가입농장명				
보험기간	20 ~ 20 (1년간)			
구분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비고
피보험자				
연락처	휴대폰		E-mail	
	일반전화		연간 방문객수	
농장주소				

<용어의 정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레포츠활동:** 래프팅, 나룻배타기, 스노클링, 서바이벌게임, 눈썰매타기, 승마, 오리엔티어링, 스케이트 타기, 얼음축구, 인공암벽타기, 물썰매타기, 활쏘기, 뗏목타기, 산악오토바이(4륵), 수영장, 체험다이빙, 스킨스쿠버, 고정시설내에서의 낚시(갯바위 낚시, 삼바리 낚시, 바지선낚시 등)

■ 추천안

구분	담보내용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선택	
			1인당	1사고당	연간총		
영업배상 시설소유 관리자 (필수)	대물배상	1십만원		1천만원	1억원	자동담보	
	A군.레포츠활동 담보(대인)	1십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input type="checkbox"/>	추천
	B군.레포츠활동 부담보(대인)	1십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input type="checkbox"/>	추천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가입여부			가입 <input type="checkbox"/> / 미가입 <input type="checkbox"/>				
구내치료비 (선택사항)	없음		5십만원	1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추천
			1백만원	1천만원		<input type="checkbox"/>	

※ 상기 추천안 외에 별도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실 경우, 빈칸에 써주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한도액 가능 구간>

- * A군 레포츠활동 담보, B군 레포츠활동 부담보: 1인당 3천만원~3억원(사고당/연간 10억원)
- * 구내치료비 : 1인당 5십만원~5백만원(사고당/연간 1천만원)
- * 자기부담금 선택에 따른 할인율 신설 : 10만원 ~ 500만원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